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0676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1145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067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서동민, 박준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이지영, 문현철

변론 종결 2018. 8. 29.

판결 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이 회사는 2016. 9. 29. D 주식회사에 일부 분할합병되었고, 2017. 7. 25. 청산종결되었다.)의 대표이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주식매매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 : 소외 회사
2. 인수 주식수 : 보통주식 10,000주
3. 총인수 가액 : 1억 원
4. 주식양수도일 2017. 2. 28.

제3조 피고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당일 원고에게 일시 지급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0,000주는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본금 2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회사 주식의 50%(1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5. 7. 27.까지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4. 15.부터 2016. 9. 26.까지 원고에게 177,4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은 1억 5,260만 원(= 3억 3,000만 원 - 1억 7,740만 원)이 남아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5. 11. 30.부터 2016. 12. 14.까지 소외회사 앞으로 합계 589,025,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E 앞으로 이체된 돈은 222,205,000원이고, 나머지 366,845,800원은 소외 회사 계좌의 출금기록사항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위 366,845,800원 중 1억 8,500만 원은 피고 및 소외 회사 계좌로 반환되었다. 결국 소외회사에서 E 앞으로 이체되어야 할 돈 중 181,845,800원(= 366,845,800원 - 1억 8,500만 원)이 원고 앞으로 출금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그밖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며,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가 2017. 2. 28. 소외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 간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한 181,845,800원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받는 대신, 원고에 대한 차용금 152,6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원고는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소외 회사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 받은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이 오갈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이므로(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주식매매대금 관련 규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10. 선고 98다31493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내지 소외 회사 사이에 대여금과 변제금으로 보이는 계좌이체 거래가 있었고, 피고 주장과 같이 E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원고 앞으로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소외 회사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을 2~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주식대금을 당일 일시 지급한다'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대금은 당일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단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라는 단서 문구까지 기재한 점, 설령 원고가 횡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피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11호증,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주식매매대금 관련규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양수도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10.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